

Philippines–Korea Forum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출장 보고서

2011. 07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장자 : 박 경 애 금융국제협력팀장
정 민 응 전문위원

1. 출장개요

1. 출장 참가자

□ KDI : 박경애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정민웅 전문위원

2. 출장 기간 및 일정

□ 2011. 06. 28 (화) ~ 2011. 06. 30(목) (2박3일)

일자	시간	세부 일정
6월 28일 (화)	11:00~	▶ 공항도착(필리핀 아퀴노 공항)
	15:00~17:00	▶ 필리핀 PPP센터 공무원 면담
6월 29일 (수)	09:20~	▶ Overview of Philippine PPP Program(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10:30~	▶ PPP Financial Assistance(K - Eximbank)
	11:00~	▶ Priority PPP Projects(PPP Center)
	13:30~17:00	▶ Discussions on Actual Projects and Regulation
6월 30일 (목)	12:00~	▶ 귀국

3. 출장지 및 대상 기관

- 수출입은행이 주최하는 Philippines-Korea Forum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행사 참석
- 필리핀 PPP센터 공무원 면담
- 필리핀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및 DPWH(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공무원 면담

4. 출장 목적

-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최근 개도국에서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PPP)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6월29일 필리핀 현지에 민간투자사업 발굴협의단을 파견하여 PPP 포럼을 개최함. 이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필리핀 현지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국내 민간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필리핀 담당공무원 면담을 통해서 국내기업이 필리핀 PPP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EDCF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PPP 인프라시장 투자환경 및 제도를 조사하고자 함.

II. 주요 조사·면담내용

1. Philippines-Korea Forum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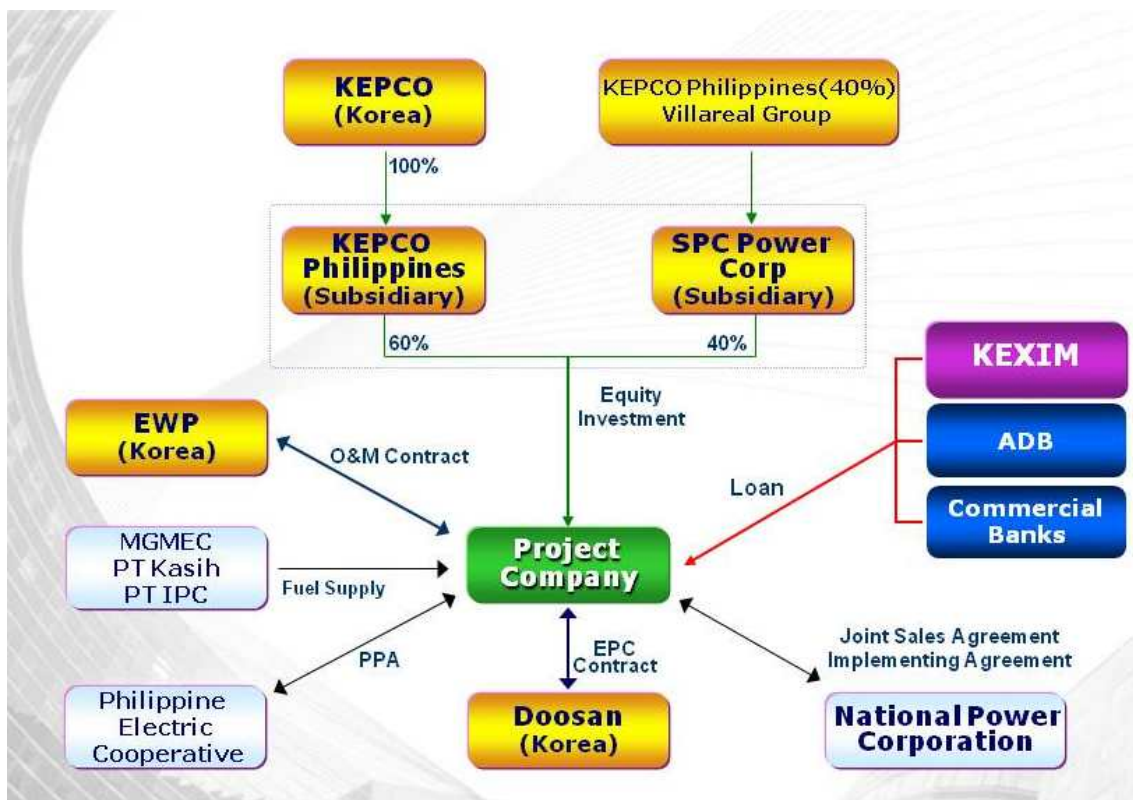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1987년 Bilateral ODA Concessional Loans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금임. 정부의 기금을 개도국에 차관형식으로 저이율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 받는 유상원조의 일종
- EDCF 자금의 목적
 - 개도국 경제안정과 산업성장에 기여
 -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공유 및 다자간 경제협력
- 수출입은행 EDCF 자금조건
 - 수출입은행의 EDCF자금은 보통 0.1%~1.5%의 저리로 제공되며 대출만기는 25~40년의 장기대출임.

Loan Amount	Up to 100% of the Project Cost* (Up to 50% for PPP Projects)
Interest Rate	0.1%~1.5% Per Annum**
Max. Repayment Period	25~40 Years**
Max. Grace Period	7~10 Years**
Repayment Method	Equal, Semi-Annual Installments
Interest Payment	Every 6 Months
Collateral	Sovereign
Loan Currency	Korean Won (US Dollar for PPP Project)

2. 필리핀 민간투자사업 EDCF 자금 활용방안

가. 일반적인 해외투자사업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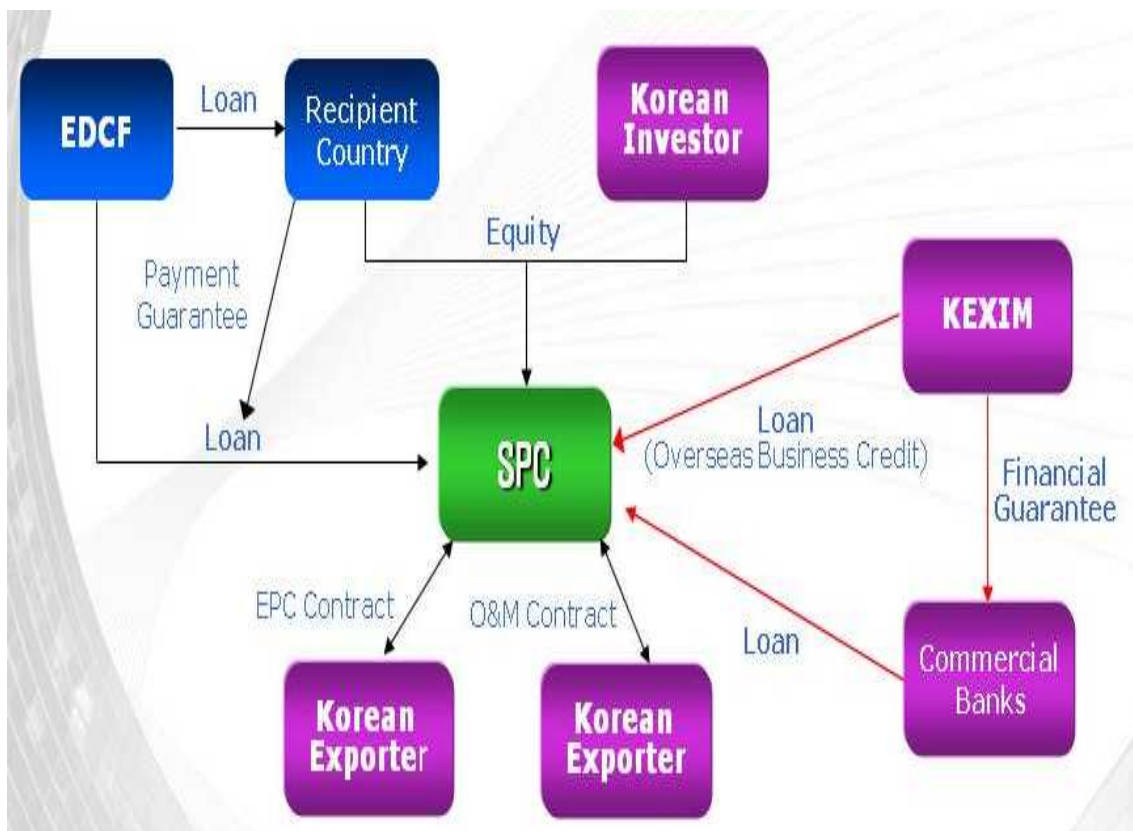
- 현재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한국전력사업의 해외투자사업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 한국전력이 컨소시엄 형태로 Project Company를 구성하고 이 Project Company가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의 사업임.
- 타인자본의 형태는 한국수출입은행, ADB, 기타 상업은행이 조달하고 Project Company가 시공, 운영, 판매 계약을 통하여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임.
- 여타 해외 Project Financing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조와 유사함.



나. EDCF자금을 활용한 필리핀 PPP사업참여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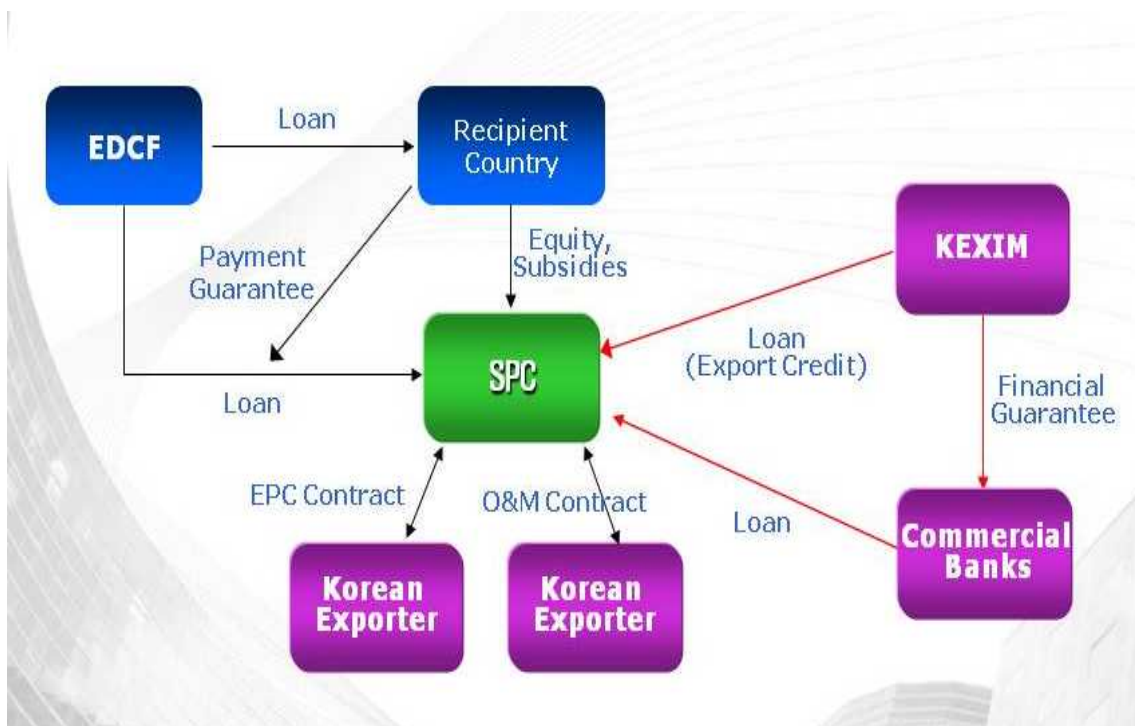
1) 국내기업의 지분참여 & 시공운영 참여

- 한국 건설회사, 재무적투자자 및 현지회사가 지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수출입은행은 현지국가에 EDCF자금을 제공함. 현지국가는 공여된 EDCF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주는 구조임.
- 수출입은행은 각종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통하여 상업은행의 대출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시공 및 운영회사는 현지 특수목적법인과 O&M 및 EPC 계약을 통하여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수출입은행의 EDCF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시공, 운영, 재무적투자자들이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으나 해외투자사업으로써 지분투자나 타인자본조달의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



2) 국내기업의 시공운영 참여

- 한국 건설회사 및 운영회사는 EDCF 자금을 공여받은 특수목적법인과 EPC 및 O&M계약을 통하여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여기에 수출입은행은 각종 신용보강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함.
- 한국 건설회사 및 운영회사는 EPC 및 O&M계약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의 위험은 낮을 수 있음



3. PPP센터와의 면담내용

방문일시 : 2011년 6월 28일(화) 15:00~17:00

면담자

참석기관	소속 및 직급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필리핀 PPP 센터	Deputy Executive Director	Ms. Cosette V. Canilao	632-895-3893	cvcanilao@ppp.gov.ph

가. 필리핀 PPP Act and Regulation

BOT법('An Act on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rposes, Republic Act 6957') 제정 및 94년 5월 Republic Act 7718로의 개정 이후 1999년, 2006년, 2011년 3회 개정이 추진됨(2011년 개정은 현재 국회에서 절차 진행 중, 2011년 내 개정 예정)

2011년 BOT법은 PPP법으로 개정 예정임

- BOT법과 PPP법의 차이점은 BOT법이 BOT 사업만을 규정했다면 PPP법은 Joint Venture, Concession(우리나라의 BTO와 유사, 정부가 시설 소유권을 가짐), BOT 사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법률임.
- 법 이외에도 BOT Law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RR)이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입찰관련 법인 RA 9184가 있음.
- RA 9184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Guideline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 PPP Guidelines, PPP Manual을 NEDA에서 제정 중이며 금년 7월말에 발표 예정임(홈페이지 게재 예정).

나. 재정지원, 출자, 신용보강 등 정부 지원사항 조사(IRR Rule 13)

-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업별로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거나 재정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짐.
 - 재정지원은 정부고시사업에만 해당되며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음.
 - 재정지원 및 출자 등의 재원은 정부 재정과 ODA라고 함.
 - 재정지원은 보상비 지원(Land Acquisition), 총사업비 분담(Cost Sharing), 연결로(Access Road) 건설의 형태를 지님.
 - 재정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며 주로 20% 전후라고 함.
 -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부문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정부원조(GA, Government Appropriations)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
- 토지보상은 정부가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IRR Rule 이외 정부지원은 지방정부별로 갖고 있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에 명시된 세제 등의 감면조항이 있음.
- 인프라펀드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PDF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ADB와 필리핀 정부가 지원하는 PDMF(Project Development Monitoring Facilities)가 있음.

다.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과 협상

- RFP 샘플은 향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 입찰에는 보통 2-3개사가 경쟁을 함.

라. 사업추진 현황

- BT사업과 BLT사업(MRT 사업 3개 등) 사례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 사업추진현황(2009년 현재)

Sector	Sub-Sector	Number of Projects	Total Investment (1990 – 2009)
Energy	Electricity	71	23,222
	Natural Gas	1	432
	Total Energy	72	23,654
Telecom	Telecom	10	15,104
	Total Telecom	10	15,104
Transport	Airports	2	572
	Railroads	1	655
	Roads	5	1,451
	Seaports	7	911
	Total Transport	15	3,588
Water & Sewerage	Utility	6	8,098
	Total Water & Sewerage	6	8,098
Total		103	50,444

- 지방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Energy, Telecom, Transport 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 사업기간은 5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지방의 소규모 사업(IT 사업, 통신사업 등)의 사업기간은 15년 수준이며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사업기간은 30년이 일반적임
- 사업의 승인 기관은 ICC(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와 NEDA BOARD가 있으며 두 기관의 역할은 동일하나 NEDA Board가 상위기관으로 중요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ODA로 추진되는 사업 사례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마. 향후 사업추진 계획

- 다음의 2011년 발표된 사업은 2013년 및 2014년까지 계약 추진 예정임.

Project Name	Indicative Date for Publication of Invitation to Bid
Privatization of LRT 1-MRT 3 Operation & Maintenance (DOTC)	July 11 Deadline for Bid Submission extended
Daang Hari-SLEX Link Road (DPWH)	June 2011
NAIA Expressway, Phase 2 (DPWH)	June 2011
Puerto Princesa Airport Development (DOTC)	August 2011
NLEX-SLEX Connector (DPWH)	September 2011
LRT 1 South Extension to Cavite Project (DOTC)	October 2011
New Bohol Airport Development (DOTC)	October 2011
Privatization of Laguindingan Airport Operation & Maintenance (DOTC)	October 2011
New Legaspi (Daraga) Airport Development (DOTC)	November 2011
CALA Expressway - Cavite Side Section (DPWH)	December 2011
LRT Line 2: East Extension Project (DOTC)	Decemb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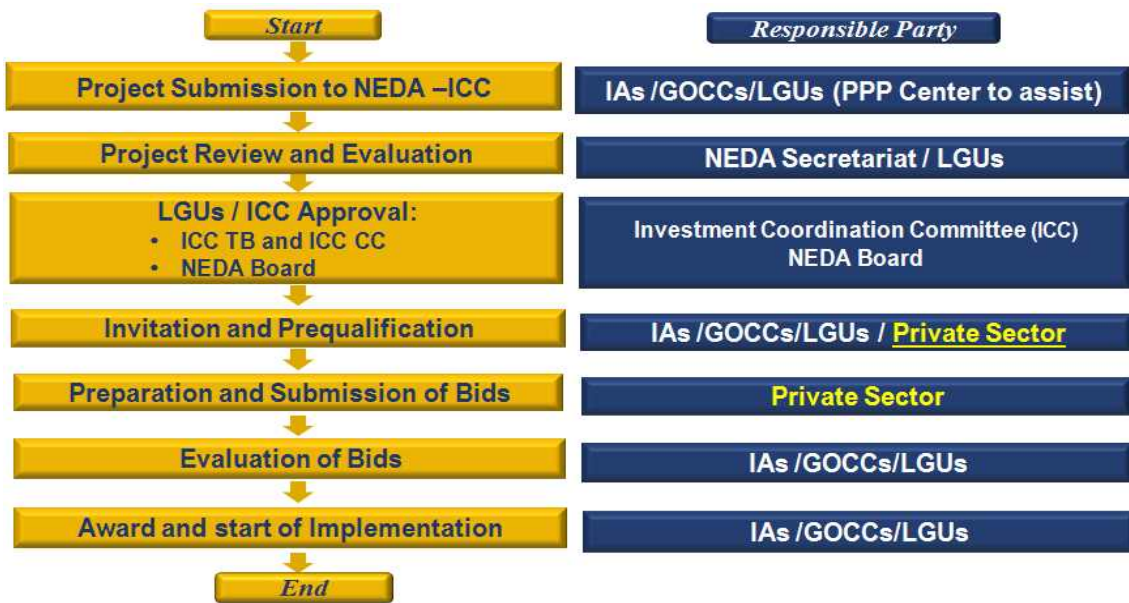
- 포괄적·통합적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CIIP,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gram)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 2013년 이후 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NEDA가 향후 수립할 것임.
- 도로, 철도, 수자원 분야의 필리핀 중기개발계획(MTPDP, The 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수립
 - MTPDP는 6년 단위(2004~2010 MTPDP)로 인프라의 건설 및 관리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임.
 - 현재 2010~2016 MTPDP가 수립되어 있음.

바.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 특별한 인센티브나 차별은 없음.
- 공공시설(상수도, 도로, 전력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규제(Ownership Requirement)가 있어 외국인 지분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있음.

사. PPP 사업 추진 시 장애물 제거 및 투자유치 노력

-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고시사업은 6개월, 민간제안사업은 9개월이 소요됨(상기 그림 참조).
- 승인절차를 더욱 단축하고 매뉴얼 등을 만들어 입찰 과정이나 방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음.
- 정권교체, 법률 변경 등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 PPP Center가 Road Show 개최
- PPP Center는 2011년 3월에 중국에서 Road Show를 개최하였고, 2011년말에 호주에서 개최할 예정임.

4.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와의 면담내용

방문일시 : 11년 6월 29일(수) 15:00~17:00

면담자

참석기관	소속 및 직급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Assistant Director	Mr. Florante G. Igtiben	632-631-3748	fgigtiben@neda.gov.ph
DPWH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Undersecretary	Mr. Rafael C Yabut	632-304-3214	yabutpye@yahoo.com

가. NEDA와 PPP Center의 역할

- NEDA는 ADB,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과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협의, 지원프로그램의 승인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개발 등 PPP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업무를 하고 있음.
- BOT Center는 필리핀의 모든 PPP사업 조정 및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PPP 사업 이행에 관한 민간투자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
- BOT Center는 2010년 9월 PPP Center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산하로 편입됨.
 - 기본업무는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에 따라 BOT 및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PPP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
 - PPP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침을 작성하고,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며, 주무관청 및 지방정부의 PPP 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지원, PDF(Project Development Facility)를 통한 금융지원,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제공.